

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4월 6일

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술개발과장 이 영 석

나. 제안이유

-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
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가농기계의
구입이 어려운 영세 소농 중심의 농가작목반 등에서 공동이용
함으로서 농기계의 구입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 및 농기계
임대 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(안 제5조)
- 임대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기간설정(안 제8조)
-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부과 및 징수기준 설정(안 제9조)
-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기준 설정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 및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(안 제5조)
- 임대기준 및 기간 명시(안 제8조)
- 임대료부과 및 징수기준 명시(안 제9조)
- 임대수입금 용도 명시(안 제10조)
- 임대료의 감면 규정 명시(안 제11조)
-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기준 설정(안 제14조)
- 임대계약의 제한 명시(안 제16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및 농가작목반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 사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
- 개별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